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4)

Special

개인·법인	개인·법인 업종(코드)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제 조(272300)	비정기	400억 원대	지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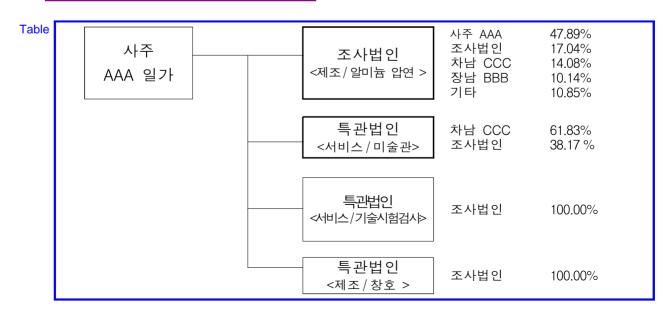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mark>가. 조사대상 개요</mark>

Text 전북 XX군에 커튼월, 조사법인은 알루미늄 창호, **나**가 등 제조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납품 후 시공까지 설립되었고, 워스톱으로 공정 단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을 주로 관급공사를 하고 있음

Text 플라스틱 사주 AAA는 '80년대에 대구에서 시출 제조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전북 후 Text 운영하다가, '0X년도에 XX군 공장을 테크노산단에 설립 전북 Text 법이으로 전환하여 향토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사주가 파킨스병으로 Text 거동이 불편하여 장남 BBB에게 '16년 경영권 승계('24.6월부터 차남 Text 사주 CCC로 대표이사 변경)하였으며, 일가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Text ○ 계열기업 현황("23.12.31. 기준)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연 반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사주의 가공 인건비 및 신용카드 사적사용	010504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에게 지급한 급여 및 4대 보험료, 법인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한 금액 적출
2	부당행위계산부인	011204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료 적출
3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050206	특수관계법인 근로자 급여 대납에 따른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부동산 임대수익 누락	011304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카페관련 부동산 임대수익 및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
(5)	외주가공비	010508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적출
6	업무용승용차	011207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에 따른 감가상 각비 및 비용 재계산
7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분여	_	특수관계법인에 미회수한 대여금에 대한 채무면제 이익(부채사후관리)
8	불공정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_	특수관계법인의 불공정증자에 따른 이익 분여 혐의 검토(세법개정안 제출)

Text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1

❖ 사주의 가공 인건비 및 신용카드 사적사용 (항목코드: 010504)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에게 급여 지급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사주급여 확인)** 국세청 내부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사주 AAA가

Text <mark>파킨슨병으로 건강악화</mark>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16년 경영에서

Text 물러났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20년~'23년 기간동안 고액 000백만 원

Text 급여를 수령하여 이에 착안함

Text - 조사법인에서는 사주 AAA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Text 조사대상기간 중 사주 AAA가 회사업무를 처리 및 결정한 근거를

Text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주 AAA의 근무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조사대상

Text 기간 중 대표이사, 관리이사 등에게 문답서를 받음

Text - 결과적으로 '20년~'23년 동안 사주 AAA는 실제로 조사법인에 출근하

Text 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이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

Text 인되어 사주에게 지급한 급여 및 4대보험 등 관련 비용 손금불산

1 및 **사주 배당 처분 등*** 처분함

Text * 급여 지급액 배당 처분, 건강보험 기타사외유출 처분

Text < 사주 급여 및 4대보험 등 >

(백만 원)

Table

ole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급여	000	000	000	000	000
	건강보험**	000	000	000	000	000
	합 계	000	000	000	000	000

Text ** 사주가 75세의 고령으로 건강보험료만 적용 대상

Text - (법인카드 사적사용) 또한, 조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주 AAA에 Text 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00백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손금 Text 불산입·배당으로 처분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예치조사) 조사팀은 사주 AAA가 실제 경영 및 참여한 사실 확인하고

Text 자, 예치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착수 당일 내부 기안문, 계약서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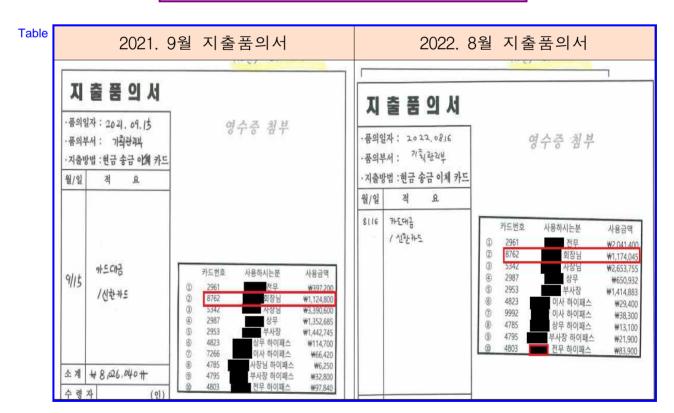
Text 전산자료 및 수동자료를 확보함

Text P 확보한 자료 내용 중 사주 AAA가 계약서, 회의록 등 결재한 문서

Text 는 확인되지 않았고, 법인신용카드 지출품의서에 카드사용자가

Text 사주 AAA로 별도 표기한 자료를 확보하였음

Text < 예치조사시 확보한 카드 지출내역서 일부 >



Text * 신한카드 뉫번호 8762의 조사법인카드 사수 AAA 사용한 사실 확인

Text - 사주 AAA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조사대상기간 중 카드 사용금액은
Text 00백만 원으로 확인됨

Text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백만 원)

Table	사용자	카드번호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사주 AAA	8762	00	00	00	00	000

Text < 조사법인의 소명서 제출내역 일부 발췌 >

Table (2) 회장 의 회사에 대한 참여와 기여도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알루미늄 창호의 제작, 공정 개선 및 공법개발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제품인 미서기창 및 단열고정 창호 발명에 기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종 타법인 대비 독자적인 제품 경쟁력을 획득하여 원가 절감을 통한 한계 이익 증가 및 타사수주량을 흡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품 단위당 낮은 고정비 배부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우수 관급업체로의 회사의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많은 경쟁 창호업체들이 도산하는 과정에서도 회장의 이러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나가고 있으므로 회사에 공헌하는 바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회장의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

회장은 회사를 2003년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회장의 집무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원들은 회장의 방문시마다 회장 집무실에서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회장의 의견을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 다. 회사의 사업확장, 중요한 자금의 차입, 대여, 중요한 영업계약 및 구매계약 체결시에 도 대주주이면서 회장인 의 결재(구두결재를 포함) 없이는 의사결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Text - 또한, 조사법인은 회사의 **영업이사 및 제조이사에게 확인서**를 받아와 Text 조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u>증거로 제시함</u>

Text < 영업이사·제조이사의 확인서 제출내역 >

Table	영업이사 확인서	제조이사 확인서					
	확 인 서	확 인 서					
	소 속: 건성사이부 성 명: 직 위: 이사 입사일자: 2020, 01, 06,	소 속: (시청사장년 성 명 : 직 위 : 이 전 입사일자 : > 이 요. // う					
	확인내용	확인내용					
	□ 회장님은 월1회 정도 회사 방문하여 영업시장 현황 질의. 경청 후 귀가 하심.	□ 회장님은 월1회 정도 회사 방문하여 영업시장 현황 질의. 경청 후 귀가 하심.					
	□ 분기별 실적보고는 회장님 집무실에서 생산이사와 간단히 구두보고	□ 분기별 실적보고는 회장님 집무실에서 생산이사와 간단히 구두보고					
	2025. 04. 11	2025. 04. 11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इ.धर्मः -	被斗					
	지방국세청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귀하					

Text ○ (문답서 징구) 조사팀은 시주 AAA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

Text 조사대상기간 중에 근무한 前 대표이사, 관리이사*에게 문답서를 받음

Text * 근무기간 : 前 대표이사 '16.12월~'24.6월, 관리이사 '13.8월~'24.3월

Text - 前 대표이사는 사주 AAA의 장남으로 '01년부터 조사법인에 입사해 Text 일했고, '16년에 대표이사로 취임 후 '24년 퇴사하였음

Text - 前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사주 AAA는 파킨스병으로 건강이 Text 악화되어 '16년 경영에서 물러난 후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Text 집무실을 유지한 것은 창업주이자 아버지에 대한 배려이었으며, 자식의 Text 도리를 다하고자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문답서를 받았음

Text < 前 대표이사 문답서 징구내역 >

Table

문 답 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진 술	주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자	관	계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위 진술자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前 대표이사로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임의로 2025. 4. 24. 14:00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

문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1*****

절문에 앞어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 회장님을 포함해서 동생 등의 가족회사인데, 대표이사 되기 전 일반 사원일 때부터 동생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업무 및 조직적인 일, 가족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있어 제지를 할려고하면, 목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일 때 기 주주로 30%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회장님 포함한 가족들에게 미운털이 박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 문 에서 2020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원종진 회장님의 근무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답 '20년도부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유는 회장님이 파킨스병을 앓으셔서 몸이 불편하셨고, 차량운행도 힘들 정도여서 차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차량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시고 다녔어야했으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 문 지금 몸상태는 어떠신가요.
- 답 지금도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뵐 때는 지금 대면은 집에서나, 누나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실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으셨습니다.
- 문 회장님이 15년도에 30억 가량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답 네 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가족이 주주라 정식적인 주총은 없었지만, 30억원 정도를 받으셔서 그 자금을 동생한테 창업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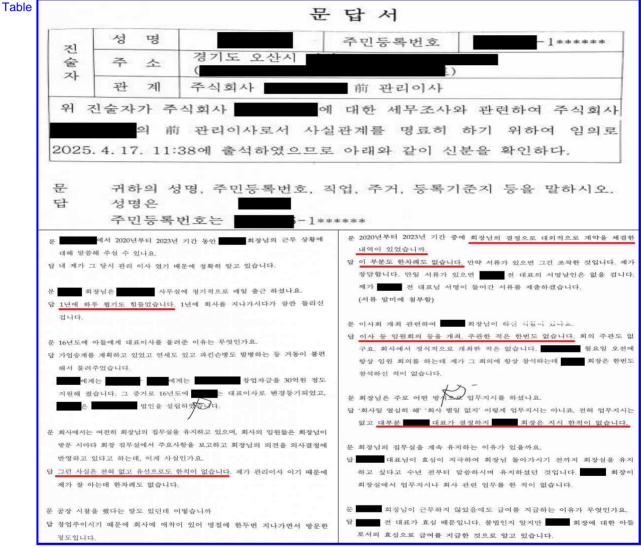
- 문 퇴직금을 지급했다는거 자체가 실질적 퇴직이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 답 네, 퇴직금 지급하고 '16년도에 대표직도 제가 하면서 회사 업무는 보지 않으 셨습니다.
- 문 회장님은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매일 출근 하셨나요.
- 답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문 2020년부터 2023년 기간 중에 회장님의 결정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었습니까.
- 답 없습니다. 그때 회사 업무는 제가 다 했습니다. 영업과 관리 업무 등을요
- 문 이사회 개최 관련하여 원종진 회장님이 하신 역할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이사회 회의는 하신가요.



- 답 예전에는 없었고, 최근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 문 그런데 회장님의 집무실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답 창업주이자 회장님이시고, 누구나 마찬가지 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 번 오더라도 내 자리가 없으면 서운할꺼 같아서 유지하고 있던 이유입니다.
- 문 회장님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저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제가 더 급여를 받아서 아 버지 용돈으로 드리고 싶었으나, 가족들 반발이 심해서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Text 라리이사는 '13년부터 재무회계팀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서 '24년까지 Text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회사의 재무회계 및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지역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자로, 사주 AAA는 대외적으로 업무지시도 없었고, Text 이사 등 임원회의 등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확인함

Text < 관리이사 문답서 징구 내역 >



Text 또한. 대표이사와 관리이사의 진술과 달리 前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영업이사와 제조이사를** Text 내용을 파악한 바. Text 가끔 지나다가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잠시 Text 간 o **격려를 하는 정도**이고,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Text 경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실질적으로

AAA가 근무하였다고 볼

Text 사주

Text (**(조사결과)** 상기와 같이 **철저한 사전 정보수집**하여 예치조사 시 자료

Text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조사기간 중에 근무한 대표이사, 관리이사

Text 등의 문답서를 징구하여 조사법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적극적인

Text 조사를 한 결과,

Text 실제로 사주 AAA는 '16년 퇴직금 정산 후 퇴사하였고, 회사 경영에

Text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익처분에 대한 배당을 급여로 처리한 것으로

Text 확인하여 급여로 지급한 000백만 원과 건강보험 000백만 원 손금불산입·

Text 배당 등 처분함

Text - 또한, 예치조사 시 확보한 지출결의서로 사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Text 카드이용금액 00백만 원에 대해 손금불산입·배당 처분함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1. 인건비
- 2. 복리후생비
-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 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Table 예규 법인 질의회신

◎ 서이46012-10891, 2003.04.30.

[제목] 비상근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 [요지]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 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Special

적출2

❖ 부당행위계산부인 (항목코드: 01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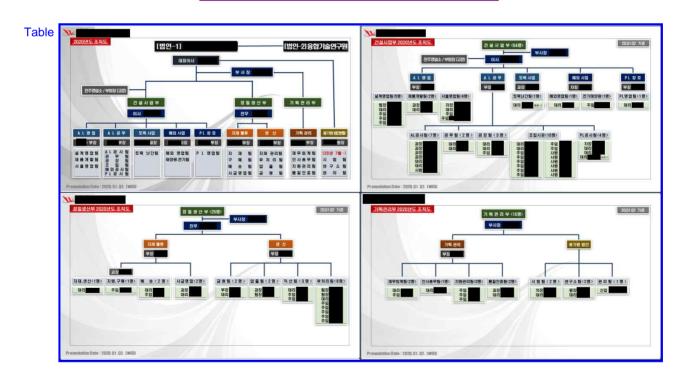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급여 대납 및 4대 보험료 지출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조직도 확보) 조사법인 자료예치 시 조사법인의 연도별 조직도를 Text 확보하여 근로소득 신고 적정 여부 검토한 바, 조직도 없는 직원에 Text 대한 인건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착안함

Text < 예치조사 시 확보한 조직도 일부 >



Text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도에 없는 직원 19명에게 '근로사실확인서'를 Text 발송하여 실제 근로사실 여부 확인하고, 전 대표이사에게 문답서를 Text 징구한 결과,

Text -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15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000백만원을

Text 조사법인 대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손금불산입하고

Text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Text < 특수관계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의 혐의 내역>

(백만 원)

Table

le 근로	ΤL	'20)년	'21	년	'22	2년	'23	3년	합	계
	. ^г	급여	비용	급여	비용	급여	비용	급여	비용	급여	비용
aa	a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bbl	b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CC	О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dd	d	00	00	00	00	_	_	_	_	00	00
ee	е	00	00	00	00	_	_	_	_	00	00
fff	:	00	00	00	00	_	_	_	_	00	00
99	g	00	00	00	00	_	_	_	_	00	00
hh	h	00	00	00	00	_	_	_	_	00	00
iii		00	00	_	_	_	_	_	_	00	00
jjj		00	00	_	_	_	_	_	_	00	00
kkl	k	00	00	_	_	_	_	_	_	00	00
III		00	00	_	_	_	_	_	_	00	00
mm	m	00	00	_	_	_	_	_	_	00	00
nn	n	00	00	_	_	_	_	_	_	00	00
00	0	00	00	_	_	_	_	_	_	00	00
합	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총합	·계	00	0	00	0	00	0	00	0		000

Text * 비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주민세(19.46%~19.99% 적용)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국세청 자료와 비교) 예치조사 시 조직도를 전산자료로 확보하였고,
Text 조직도의 직원명세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직원이 불일치한 사실을 인지함

Text (근로사실확인서) 조직도에 누락된 직원 19명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하기 위해 Text (근로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조사법인에서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회신받음

Text < 근로사실확인서 발송분 중 일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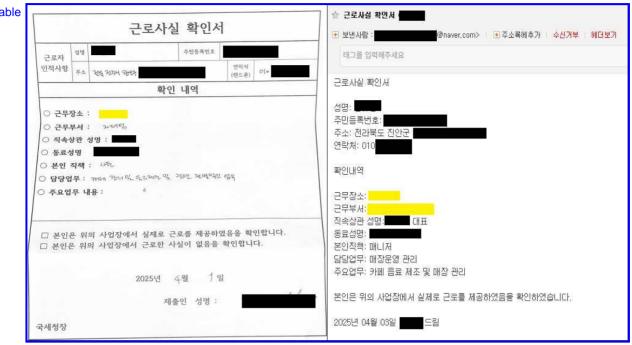
Table 근로사실 확인서 자료제출 협조 안내 주민등록번호 그로자 귀하 인적사항 연락치 확인 내역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무장소 : 우리 청에서는 귀하께서 근무한 ○ 근무부서 :)에 급여지급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 전북 완주 ○ 직속상관 성명 : 하여 귀하꼐서 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2,345,256원의 근로소득이 ○ 동료성명 신고되었기에 이에 대한 실지 근로제공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본인 직책 : ○ 담당업무 : - 실지 근로제공 사실이 있었다면 첨부 확인서 진술내용에 근무장소, 근무부서, ○ 주요업무 내용: 직속상관 성명, 직책, 동료성명, 담당업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로 급여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 실지 근로제공 사실이 없었다면 첨부 확인서 진술대용에 "실지근로 사실 □ 본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없음"으로 작성하여 우편 및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본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증빙자료 제출 등 이 건 거래내용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실지근무를 입증할만한 2025년 서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성명: (인) <자료 제출 기한 : 2025. 4. 11.까지> 국세청장

Text * 성확한 확인을 위해 근무상소, 근무부서, 농료이름 능 구제석으로 삭성 요정함

Text - 회신내용 검토한 바, 조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회신한 직원도 Text 있었으나, 동료성명 등 담당업무에 대한 서술이 부실하였고, 일부는 Text 조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회신 받음

Text < 근로사실확인서 회신 내용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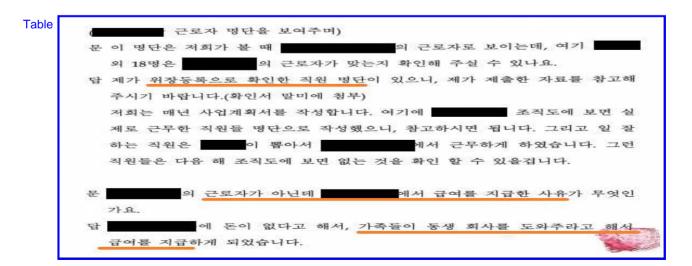
Table



혐의 근로자들이 혀시점에 퇴사하여 미회시 되 확인서'로 여부륵 실제 파다하기 곤라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한 BBB에게 즤 확인한 바

Text 차남 CCC가 운영하는 **특관법인의 미술관 경영이 어려워서** 조사법인에서 근로자에 대해 조사법인에서 인거비 및 4대보험 과려 비용 Text 지급한 진술함 것으로

> 대표이사 BBB 문답서 前



Text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또한,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ext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법인 조직도에 없는 직원 15명은 특수관계

Text 법인에서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Text < 유튜브 확인내용 >

Text (조사결과) 위와 같이 예치조사, 근무사실확인서, 문답서 등을 통해

Text 특수관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15명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조사법인에서

Text 대신 지급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 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 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이하 생략-

Special

적출3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항목코드: 050206)

특수관계법인 근로자의 급여 및 4대보험료 대신 지급하여 이익 증여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특관법인 직원 급여 대납) 적출2에서 조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직원 급여

Text 및 4대 보험료 000백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Text 사주의 차남 CCC가 주주('20년 100%, '21년 이후 61.83%)이자 대표이사임

Text < 특수관계법인 급여 등 대납금액>

(백만 원)

Table

le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급여	000	000	000	000	000
	4대보험료 등	000	000	000	000	000
	합 계	000	000	000	000	000

Text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 조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급여

Text 등을 대납함으로 인해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인 CCC에게 000백만 원의

Text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CCC를 증여세 세목별 조사 대상자로

Text 선정하여 00백만원 과세함

Text < 지분율에 따른 분여이익 내역 >

(백만 원, %)

Table

le	주주	2020년		2021년		202	22년	2023년		합계	
	十十	이익	증예	이익	증세	이익	증예	이익	증세	이익	증세
	합계	00	00	00	00	00	_	00	-	00	00
	CCC	00	00	00	00	00	_	00	_	00	00
	조사법인	_	_		_	00	_	00	-	00	_

Text *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제5항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조사대상 추가선정) 조사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출에 그치지 않고,
Text 자세실익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중여세 세목별 조사로 추가 선정하여 과세함



Text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요건 검토) 조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근

Text 로자의 급여 등을 대납 지급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CCC에게

Text 이익 분여한 혐의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Text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의거 요건 충족 여부 검토한 바,

Text - (특정법인) 특수관계법인은 조사법인 주주 CCC가 '20년 100%, '21년

Text 61.83%의 지분 보유하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30%

Text 이상인 법인" 요건 충족함

Text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조사법인의 지분은 사주 AAA 일가가 100%

Text 보유하여 특수관계 성립함

Text < 조사법인 주주명세 '20년~'21년 기준>

(주. 백만 원. %)

					(1 , 1	L L, /0/
주주명	관계	보유주식	액면가액(원)	금액	지분	비고
합 계		000		000	100.00	
AAA	본인	000	10,000	000	47.89	
CCC	자	000	10,000	000	31.13	
DDD	기타친족	000	10,000	000	10.85	
BBB	자	000	10,000	000	10.14	
	합 계 AAA CCC DDD	합 계 본인 CCC 자 DDD 기타친족	합계 000 AAA 본인 000 CCC 자 000 DDD 기타친족 000	합계 000 AAA 본인 000 10,000 CCC 자 000 10,000 DDD 기타친족 000 10,000	합계 000 000 000 AAA 본인 000 10,000 000 CCC 자 000 10,000 000 DDD 기타친족 000 10,000 000	주주명관계보유주식액면가액(원)금액지분합계000000100.00AAA본인00010,00000047.89CCC자00010,00000031.13DDD기타친족00010,00000010.85

Text - (과세대상 거래) 조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급여 및 관련 비용

Text 등을 대납한 행위는 금전 무상을 지워한 것으로 거래 요건 충족됨

Text - (증여의제이익 1억 원 이상) '20년~'21년 조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Text 근로자 급여 및 관련 비용 000백만원을 대납 지급하므로써 주주 CCC이 000백만원의 이익을 분여받아 1억원 이상 요건 충족함

Text < 지분율에 따른 분여이익 내역>

(백만 원)

Table

le	주주	2020년		202	1년	합계		
	十 十	이익	증여세	이익	증여세	이익	증여세	
	합 계	000	000	000	000	000	000	
	CCC	000	000	000	000	000	000	
	조사법인*	_	_	000	_		_	

Text * '21년 유상증자로 CCC 61.83%. 조사법인 38.17%

Text ○ (파급효과) 상기 조사와 같이 시**주일가가 자녀 세대로 재산과 경영권 승계**

Text 과정에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 자녀법인의 비용을 대납하는

Text **편법적인 방법**을 적출한 사례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특정법인**

Text 중여의제 여부 검토에 활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 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 도·제공하는 것
- 이하 생략

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 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5.7>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 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Special



❖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수익 누락 (항목코드: 011304)

사주의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료 과소 수취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건물증축공사 확인) 조사법인은 '20년 조사법인 소유의 전북 전주 소재의

Text 공장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건물 중축 및 내부 공사하여 사주의

Text 자녀에게 보증금 000백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됨

Text ○ (임대수익 누락) 조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적정

Text 여부 검토한 바, 임대료 수익 00백만 원(간주임대료 00백만 원 포함)을

Text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Text *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 = (해당 자산의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제공일수/365

Text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제공일수/365

Text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 내역>

(백만 원)

Table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이자율	1.8%	1.2%	1.2%	2.9%	3.5%	00
법인세법 임대료수입	00	00	00	00	00	00
VAT 간주임대료	00	00	00	00	00	00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건물 중축공사 자본적 지출) 자녀에게 임대한 전주 덕진구 소재의

Text 부동산은 당초 제조공장이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카페로 임대하기

Text 위해 '20년 일반음식점 용도로 증축공사*를 함('20.12.30일 건출물대장 변경)

Text - 증축공사를 위해 조사법인에서 000백만 원, 특수관계자 자녀가 000백만 원*의

Text 자본적 지출을 한 것이 확인되어 건물가액에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

Text 적정 시가로 계산함

Text * CCC이 증축공사 시, 지출한 공사비 000백만 원을 사실상 조사법인의 선수임대료(부채)로

Text <mark>간주하여, 법인세법상 임대료 적정 시가를 임대료 수익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경정</mark>

Text <부동산 기준시가 내역>

(m², 백만 원)

Table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000	000	000	000	000
	토지	000	000	000	000	000
	건물	000	000	000	000	000

Text * '21.12월 토지 감정평가금액 000백만 원 확인되어 '22년 부동산임대 재계약 시점에 Text 토지가액에 반영함

Text < 예치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 '토지 감정평가서' >

			준수하고 감정평기	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정평가사				(인)		
	(주)	전북지	사장	i i			
정평가액	일십일억오천육십	육만원정	(₩1,150,660	,000)			
의 의 인			감정평가목적				
채무자 "			제출처		(2) (3-2-8)		
소유자			기준가치	시장	가치		
(대상업체명)				-			
목록 드기((참거브즈메디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시근거	STAISET			2021.11.30 ~2021.12.08	2021.12.0		
공	공부(公簿)(의뢰) 시		사 정	감정평	형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821.9	토지	821.9	1,400,000	1,150,660,0		
		ol	ə q	1024			
-			<u> </u>				
	작성 정평가액 니뢰인 내무자 유자 당업체명) 루 목 시근거 공	작성하였기에 서명 - 날인합니 감정평가사 (주) 정평가액 일십일억오천육십 의뢰인 배무자	작성하였기에 서명 -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주) 전복지 전복지 정평가액 일십일억오천육십육만원정 대회인 대무자	작성하였기에 서명 -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구) 전복지사장 전쟁가액 일십일억오천육십육만원정 (₩1,150,660 대회인 감정평가목의 제출 처 기준가치 감정평가목의 기준가치 감정평가로 기준시점 고인1.12.08 공부(公簿)(의뢰) 사 정 공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토지 821.9 토지 821.9	감정평가사 (주) 전복지사장 경평가액 일십일억오천육십육만원정 (₩1,150,660,000) 대회인 감정평가목적 (시기년 (시기년 (시기년 (시기년 (시기년 (시기년 (시기년 (시기년		

Text (간주임대료 누락) 또한, 조사법인은 해당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Text 보증금으로 계상한 00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간주임대료

Text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00백만원 적출함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 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 전세금 또는 × 임대 보증금 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65(윤년에는 366)

Special

적출5

❖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항목코드: 010508)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근로소득으로 지급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조사법인 근무자 외주가공사업자)** 조사법인에서 근로자가 개업한 Text (직원 명의 개인사업자 7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외주가공비 적정 여부 검토함

Text (의주가공비 근로소득 처리) 상기 외주가공업체에 '거래사실확인서'

Text 발송하고, 대금 송금한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실시하여 실제 거래
사실 여부 확인한 바,

Text - 7개의 거래처에서 실제로 알미늄샤시 제작, 창호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Text 것으로 소명(계약서, 용역이행확인서, 정산서 등)하였고, 금융조회 결과

대금 입금 후 현금 출금하는 등의 가공거래를 의심할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처와 거래 내역 적정

Text - 다만, 5개 거래처는 사업 운영기간과 조사법인에 근로한 기간이 겹치는

Text 내역이 있어 검토한 바, 거래처에 창호시공 용역을 하도급으로 주고,
시공 자격자를 조사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하여 공사대금 중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5개 거래처의 근로소득

000백만 원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거래처에 자료 파생함

Text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사업소득 자료 내역>

(백만 원)

								(L L
Table	근로자	상호(사업자번호)			급여			비고
	ᆫ도사	정오(자답자민오)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미그
	aaa	(000-00-00000)	000	000	_	_	000	
	bbb	(000-00-00000)	_	_	000	000	000	
	ccc	(000-00-00000)	_	Ī	_	000	000	
	ddd	(000-00-00000)	_	-	-	000	000	
	eee	(000-00-00000)	000	000	000		000	
	합 계		000	000	000	000	000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기대사실확인서) 조사법인 근무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로 Text 확인된 7개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여 회신요구 함

Text < 거래사실확인서 발송분 중 일부 >

e	거래사실 확인서
자료제출 협조 안내 ■■■■ _{귀하}	1. 인적사항: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에서는 귀하와 거래한	2. 확인내용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및 실제 거래금액] (연위 : 유단기엔, 천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이의 기에는 이 대하여 거짓세금	과세기간 공급자 세금계산서 실제 차이금액 매수 금액① 거래금액② (①-②)
계산서 수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2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급하여 신고하였기에 그실지거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상기 본인은 거래처 와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내용이 아래 진술내용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진술내용》
- 실지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증빙서류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입·출금통장, 입금표 및 기타 증빙) 를 첨부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기레일시, 장소, 당시 기레상대방(실기레자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 실지거래가 없었다면 첨부 확인서 진술내용에 '실지거래 사실 없음'으로 작성하여 우편 및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하여 주시가 의합니다. 무해의 기계하여 유시가 의합니다. 무해의 모든 기계 기계하여 주시가 의합니다. 무해의 기계하여 설립 최목자 <mark>기계사설 협임*</mark> 도착 기계 기계세념이 많을 경우 별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일
만일,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회신이 없을 시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확인자 상 호 : 성 명 : (인) 구인중독선호 :
<자료 제출기한: 2025. 4. 11.까지>	연 각 처 : 국세공무원 귀하

Text - 회신내용 검토한 바, 실제로 알미늄샤시 제작, 창호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Text 것으로 계약서, 용역이행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소명함

Text < 거래사실확인서 회신분 중 일부 >



- Text () (금융조사) 금융조회 결과 대금 입금 후 현금 출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Text 의심할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Text (거래처 자료파생)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5개 거래처에

 Text 자료 파생함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억 원의 추징

 Text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Special

적출6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항목코드: 011207)

운행일지 누락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Compared to a compared to a compared

Text O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재계산) 차량 운행기록 등 작성·비치하지

Text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운행일지 누락된 차량에 대해 업무사용비율

Text 000만원 한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 등 000백만원 손금

Text 불산입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상여 처분하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Text 000백만 원 손금산입·△유보처분함

Text *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Text -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인정

Text - 1,500만원 초과한 경우 : 1,500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기 (자료제출 요구) 조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Text 총 000백만 원으로 고가의 승용차가 있어 법인업무용으로 적정하게 Text 사용 및 관리 여부 확인하고자 요청하였으나,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못함

Text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m², 백만 원)

 Table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금액
 234
 296
 303
 296
 1,129

Text - 이에 차**량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운행일지

Text 누락된 차량에 대해 업무사용비율 1,500만원 한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Text 및 유지비용 등 재계산함

Text < 업무용승용차_업무미사용 내역 >

(백만 원)

Table

е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업무미사용 금액	000	000	000	000	000
	기 손금불산입금액	000	000	000	000	000
	당 손금불산입금액	000	000	000	000	000

Text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내역 >

(백만 원)

Table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감기상각비 한도초과	000	000	000	000	000
한도초과 기 신고액	000	000	000	000	000
과다신고액(손금추인)	△000	△000	△000	△000	△000

Text < 운행일지 미작성 차량별 재계산 내역 >

(백만 원)

Table

е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구분	혐의금액				
	시당단오	시 6	케크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비용계상	_	000	000	000	000
	165루****	카이엔	리스	업무미사용	_	000	000	000	000
				상각한도초과	_	000	000	000	000
				비용계상	_	000	000	000	000
	108수****	우루스	리스	업무미사용	_	000	000	000	000
				상각한도초과	_	000	000	000	000
				비용계상	000	000	_	_	000
	10라****	벤츠E300	리스	업무미사용	_	_	_	_	_
				상각한도초과	_	_	_	_	_
				비용계상	000	_	_	_	000
	12루****	벤츠E300	'15. 11. 6.	업무미사용	_	_	_	_	_
				상각한도초과	_	_	_	_	-
				비용계상	000	000	000	_	000
	153호****	벤츠 S350	리스	업무미사용	000	000	000	_	000
				상각한도초과	000	000	000	_	000
			초E300 리스	비용계상	000	000	000	_	000
	36루****	벤츠 E300		업무미사용	_	_	_	_	_
				상각한도초과	_	_	_	_	_
				비용계상	000	_	_	_	000
			리스	업무미사용	000	_	_	_	000
	07 H	411 - 0500		상각한도초과	000	_	_	_	000
	37부***	벤츠 S500		비용계상	000	000	000	000	000
			'20. 11. 26.	업무미사용	000	000	000	000	000
				상각한도초과	_	_	_	_	_
				비용계상	_	_	_	000	000
	49로****	벤츠 S400	'23. 10. 13.	업무미사용	_	_	_	000	000
				싱각한도초과	_	_	_	_	_
				비용계상	000	000	_	-	000
	53수**** 벤츠E350	'16. 11. 3.	업무미사용	_	_	_	_	_	
				싱각한도초과	_	_	_	_	_
				비용계상	000	000	000	000	000
	합 계			업무미사용	000	000	000	000	000
		— ·			000	000	000	000	000

Text 나. 적출항목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람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Table

적출7

❖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분여 (부채사후 관리)

특수관계법인에 미회수한 대여금에 대한 채무면제 이익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19년 조사법인은 대표이사 CCC가 100% 소유하고

Text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현금 00억 원을 대여한 후 '21년 중 00억 원은

Text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회수하였고, 잔액 00억 원에 대해서 조사일 현재까지

Text 미회수한 것으로 확인함

Text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확인 >

Table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1) 당기 (단위: 천원) 당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면 채무(+2) 특수관계구분 채권(*1) 종속회사 566,783 4.351.767 (단위:천원) 과계하사 3 120 951 특수관계자 거래구분 감소 기말 기초 증가 주주 등 주주임원 235,040 600,000 (*1)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등, (*2) 차입금 등 4,000,000 300,000 4,300,000 2) 전기 대여금 100.000 100,000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채권(*3) 채무 3,000,000 51,479 3,051,479 종속회사 4,608,123 대여금 130,277 100,000 230,277 관계회사 주주임원 3.000.021 차입금 600,000 600,000 주주 등 주주임원 132,754 (+3) 매출채권, 대여금 등

Text - '23년 회계감사 시 당 대여금에 대한 100% 대손충당금 설정, 특수
Text 관계법인의 법정관리 신청 이력이 있는 사실(특수관계법인은 채무
Text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채권 포기 여부를
Text 회사에 소명 요청함

Text - 조사법인은 '21년 채권 출자 전환 시 대여금 잔액 00억 원에 대해 Text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은 '25년으로 소명함 Text - 이에 부채 사후 관리하여 법정관리개시 내지 소멸시효 완성일에 채무 Text 면제이익과 특정법인과의 이익을 통한 중여 의제 과세 예정임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관련 추징 예상세액 : 법인세 0억 원, 증여세 0억 원

Text < 부채사후관리 대상 입력 내역 >



Table

적출8

❖ 불공정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세법개정안 제출)

특수관계법인에 미회수한 대여금에 대한 채무면제 이익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대여금의 출자전환) 조사법인은 대표이사 CCC가 100% 소유하고 Text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19년 중 현금 00억 원을 대여한 후, '21. 7. 27.자

Text 특수관계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CCC가 신주 인수 포기한

Text 194,660좌를 대여금 00억 원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음

* 출좌수 210,000좌, 납입총액 00억 원(1좌당 단가 6,678원)으로 하는 유상증자로,

Text 기존 주주 CCC가 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 증자 시 CCC는 15,340좌(7.3%)를 0억 원에

Text 인수하고 인수 포기한 194,660좌(92.7%)를 조사법인이 00억 원에 재배정받음

Text ○ **(주식가치평가)** 조사팀이 상증법 보충적 방법에 따라 산정한 특수관계

Text 법인의 1좌당 가액은 **2,581원으로 평가**되고, 1좌당 4,097원 고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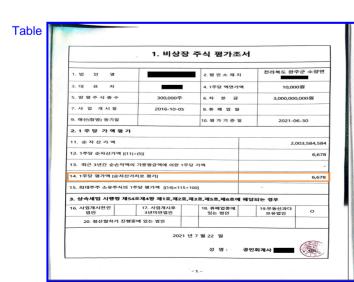
Text **6,678원에 유상증자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000백만 원*,

Text 불공정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000백만 원**에 대해 소명 요청함

Text * 194,660좌 × 4,097원 = 000백만 원

Text ** CCC 구 출좌 가치 증가액: @2,581원→@4,268원

Text < 비상장 주식 평가조서 일부 >



광가대상병	រស្ន :				평가기준일	2021	06-30
	자 산	3 et			무 제 :	B 94	
계정과목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맥	대화대조표	25 W	계정과목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대차대조표 공 핵	>> 메
92 28	11,815,397,361	11,815,397,361		E2 20	9,811,812,777	9,811,812,777	
현금일현공성자산	210,174,615	210,174,615		216/01/21 23	131,043,909	131,043,909	-
외상매출금	6,853,293	6,853,293	-	미지금금	2,909,832	2,909,832	
선금금	6,780,500	6,780,500	-	예수금	185,340	185,340	
산품	8,887,425	8,887,425		무가세에수공	1,113,207	1,113,207	
토지	3,427,608,000	3,427,608,000	14	선수금	545,000	545,000	-
건물	8,666,140,984	8,666,140,984	-	이지금비용	12,015,489	12,015,489	
감가삼각누계역	(-)913,137,256	(-)913,137,256	-	단기차임금	4,301,000,000	4,301,000,000	
구축별	113,072,216	113,072,216	-	중기차립공	5,313,000,000	5,313,000,000	-
감가삼각누계백	(-)10,366,461	(-)10,366,461	-	기타보증급	50,000,000	50,000,000	-
차탈문반구	97,645,934	97,645,934	-				
감기상각누계역	(-)27,523,465	(-)27,523,465	-				
골구화기구	4,455,000	4,455,000	-				
감가삼각누계액	(-)167,433	(-)167,433	-				
비용	193,329,487	193,329,487	-				
감가삼작누계맥	(-)123,056,588	(-)123,056,588	-				
시설공치	30,007,450	30,007,450	-				
감가삼각누게역	(-)19,223,972	(-)19,223,972	-				
임목	11,982,000	11,982,000	-				
기자제	120,313,012	120,313,012	-				
감가상작누계맥	(-)67,611,632	(-)67,611,632	-				
상표원	1,757,252	1,757,252	-				
기타보증금	77,000	77,000	-				
미술작품	77,400,000	77,400,000	-				
			- 3	-			

т	_	ᆈ	_
	н	O	œ

Г			토지	74필지(25,203 m²)		
1	성명/사업자명	과세물건구분		산소재지 토지취득일자	면적	공시가격
2	O THE HE THE		THE WITH CONT.	함계	25,203	1,726,548,600
3	유한회사 제이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0161021	41.48	1,962,004 179,267
4 5	유한회사 제이	토지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9.21	435,633
6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1.52	1,017,896
7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6.59	3,216,297
8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09	294,147
9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4.78	713,874
10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34.54	1,668,282
11	유한회사 제이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0161021	1,194.26 109.29	60,190,704 5.508.216
12	유한회사 제이	토지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65.14	13,363,056
14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19.31	31,213,224
15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24.18	9,729,412
16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432.29	18,761,386
17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39.56	1,716,904
18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95.97	4,165,098
19	유한회사 제이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0161021	31.71 13.57	1,347,675 576,725
20	유한회사 제이	토지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1.13	2,598,025
22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5.59	237,575
23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91.56	35,131,248
24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3.28	3,214,624
25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53.53	7,799,324
26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358.63	18,218,404
27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482.6 206.61	25,674,320
28	유한회사 제이 유한회사 제이	토지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0161021	930.63	10,991,652 49,509,516
29 30	유한회사 제이	토지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930.63	4,530,512
31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79.26	4,026,408
32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33.93	1,723,644
33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52.83	7,763,764
34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3.98	710,184
35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9.44	1,495,552
36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2.6	640,080
37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56.77	2,883,916
38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0161021	5.19	263,652
39	유한회사 제이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114.11 4,076.74	106,551,144 305,467,696
40	유한회사 제이	토지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373.07	18,802,728
41	유한회사 제이	도시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905.08	45,616,032
43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1.63	553,588
44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52.4	2,494,240
45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4.79	228,004
46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7.18	1,293,768
47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6.99	846,102
48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32.75	1,630,950
49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99	148,902
50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7.27	362,046
51	유한회사 제이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0161021	145.49 280.55	7,390,892 14,251,940
52 53	유한회사 제이	토지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5.67	1,304,036
54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2.29	3,164,332
55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315.06	173,643,360
56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535.88	242,009,280
57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32.06	12,995,360
58	유한회사 제이	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563	31,528,000
59			소계		19,431	1,303,754,600
00	으하하나 데이트	-1	저브트병자치도 아즈그	20161021	44.00	2 100 400
-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41.33	2,190,490
	유한회사 제이토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7.69	937,570
62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79.69	4,223,570
63	유한회사 제이토지	d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7.29	386,370
	유한회사 제이토지	3.4.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5.01	840,560
100 M		1.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42	359,520
66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8.93	1,620,080
67	유한회사 제이토지	ZI.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64	147,840
7.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393.44	22,032,640
		*				
	유한회사 제이토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68.44	9,432,640
70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758.69	42,486,640
71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69.43	3,888,080
20.0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599.79	33,588,240
1.100 E		*				
	유한회사 제이토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256.78	14,379,680
74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156.59	164,769,040
75	유한회사 제이토지	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1	105.84	5,927,04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4	584.22	32,716,320
Company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4	250.11	14,006,160
78	유한회사 제이토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4	1,126.58	63,088,480
79	유한회사 제이토지	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161024	103.09	5,773,040
80			소계		5,772	422,794,000
-0					130	

- (소명내용) 특수관계법인은 소유 중인 토지(22억 원)*를 '21. 4. 22.자 1개 감정평가(34억 원)하여 회사의 순자산을 8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Text 중액한 후, 유상증자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소명
- Text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임야 25,203㎡, 장부가액 22억, 기준시가 17억 원
- Text 검토 결과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평균가액을

 Text 시가로 보아야 하나, 본청 해석(기준-2023-법규재산-0160, 2024. 4. 25.)에

 Text 따르면 필지별로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만 2개 이상 감정평가가 필요

 Text 하므로 회사 소명 내용 적정함
- - Text 그러나, 해당 토지들은 전북 완주 소양면 일대 **연접한 55필지**(19,431㎡, 기준시가 합계 13억 원)와 같은 면 대흥리 일대 연접한 19필지(5,772㎡, 기준시가 합계 4억 원)로 이루어져 사실상 토지 2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중
 Text 소양면 일대 연접 토지의 기준시가는 13억 원으로 2개 이상 감정평가가
 Text 필요한 것임
 - Text 이를 악용하여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토지를 분할하여 고의로 10억 원

 Text 미만으로 이르게 하는, 탈세 유인 동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바

 Text 이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세법 개정안 제출) 위의 사례와 임의로 필지를 분할 한 후, 기준시가
Text 10억 원에 미달하게 하여 감정평가하는 악용의 사례가 있으므로 인근
Text 필지 합산하여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제출함

Text < 국세법령시스템 세법개정안 제출 내역 >

Tab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개정건의 건의구분:개정 등록부서: 등록일자: 2025.05.28.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 분류기호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증세과 소관과 ■ 현행규정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 개정의견 내용 ⑤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인근 필지의 기준시가 를 합산하고, 개별건물의 경우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 개정(신설·폐지) 필요성 - 현행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제5항은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나,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 시 필지별로 판단하는 것 - 현영 파장에 되어간 집 제00초제38년 집성가격을 혈영할 때 대통령정으로 형어도 이에 먹어 할 여성의 집정기단에 집중을 구최하였어 하다, 포스크 영구 으로 판례 및 과세기준자문이 있음 - 감정평가를 1곳에서 받는 경우 주관이 개입되고, 평가금액이 왜곡 되어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짐 - 예로 유상증자 시 토지가액을 높여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해 이를 악용하여 필지를 분할하여 감정평가를 1곳에서 받아 불공정 유상증자한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다수의 필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 1필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은 인근 다수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10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② (서식2) 의견제출서식(세법령).hwp (112.0KB) 丞

Table

세법·령·규칙 개정 건의 사항									
관련법령	조 항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개정(신설ㆍ폐지)사유	분류 기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⑥ 법 제30조제항항 천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u>부동산은</u> 토지의 경우 인근 필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하고, 개별건물의 경우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제5항은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 이상의 감정기관 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나,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	0				